

#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 이 설명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영 제6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는 제외)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시장참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료입니다.

◆ 고객님께서 주식거래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최선집행기준 개요 및 주요 용어

### 1. 최선집행기준 개요

- 가격, 거래비용, 규모, 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회사의 기준으로, SOR\*주문은 최선집행기준에 의한 판단으로 주문을 집행합니다.

\*SOR(Smart Order Routing) : 각 시장 별 거래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거래시장을 선택할 수 있는 자동주문 전송시스템

### 2. 최선집행기준 관련 주요 용어 (영 §66의2② 관련)

#### 1) 통합호가와 주문유형

가. 통합호가란 고려대상시장(회사가 주문을 배분하기로 한 1개 이상의 거래 집행시장으로 거래소, ATS(대체거래소)를 의미)에 한하여 실시간으로 통합한 호가입니다.

#### 나. 주문 유형

① “기존 물량 체결 주문\*(Taker Order)”이란, 대상 상품에 대하여 통합호가창(Order Book) 내 기존 물량(호가 잔량)을 이용하여 즉시 체결되는 주문입니다.

\* (예시) 시장가 주문(Market Order)는 기존 물량 체결 주문에 해당 등

② “신규 물량 조성 주문\*(Maker Order)”이란, 대상 상품에 대하여 통합호가창내 신규 대기 물량을 조성하는 주문입니다.

\* (예시) 지정가 주문(Limit Order, 투자자가 대상 증권의 가격과 수량 등을 지정하게 되는 주문) 중 즉시 체결되지 않은 물량은 신규 물량 조성 주문으로 남게 됩니다.

※ 단, 시장가 또는 지정가 주문 시 한가지 유형이 아닌 Taker Order 와 Maker Order 가 혼합된 유형으로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2) 최선의 거래조건 관련 용어

### 가. 상품의 가격

- 최선의 거래조건 집행을 위한 “상품의 가격”이란, 투자자의 상품매매를 위한 통합호가창에서의 주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 나.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 ① 투자자가 매매체결 관련 부담하는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이란, 주문집행에 수반되는 거래비용 중 주문별로 달리 부과될 수 있는 명시적 비용을 의미하며 이를 “거래비용”이라 합니다.
- ② 암묵적 비용이란 사전적으로 요율이 확정된 명시적 거래비용 외의 비용(시장충격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다. “규모”란 개별 주문의 규모이며, 매수주문 수량 또는 매도주문 수량을 의미합니다.

라. “총금액”이란 가격,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이하 ‘거래비용’), 규모를 감안하여 금융투자상품매매의 반대급부로 투자자가 지불(수취)하게 되는 “총비용(총대가)”입니다.

- ① “총비용”이란, 매수주문 시 투자자가 지불하는 금액과 비용을 고려한 총매수금액으로 “매수금액과 거래비용의 합\*”으로 합니다.

$$* \text{매수시 총비용} = [(\text{주당 가격} \times \text{매수수량}) + \text{거래비용}]$$

- ② “총대가”란 매도주문 시 투자자가 수취하는 가격과 비용을 고려한 총매도금액으로 “매도금액과 거래비용의 차\*”로 합니다.

$$* \text{매도시 총대가} = [(\text{주당 가격} \times \text{매도수량}) - \text{거래비용}]$$

※ 총금액 판단시 고려하는 거래비용은 투자자가 주문시점에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으로, 최종적으로 회사의 수수료체계에 따라 산정되어 실제 납부하게 될 거래비용과 다소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 마. 매매체결 가능성

- 주문이 집행되어 실제로 매매체결 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회사별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세부기준은 II.3.2.)나 신규 물량 조성 주문 참고).

## II. 최선집행 세부 기준

### 1. 적용 대상 증권의 범위

-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 2. 회사의 대상 집행시장

#### 1) 집행시장의 선택

가. 회사는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해 1.에 해당하는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모두 주문집행 시장으로 합니다.

나. 가.에 대한 회사의 주문집행 시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한국거래소 개설 증권시장(이하 'KRX')
- ② 다자간매매체결회사(넥스트레이드) 개설 증권시장(이하 'NXT')

## 2) 최선집행기준의 적용

가. 회사는 투자자의 주문을 집행할 때마다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을 배분할 시장을 판단합니다.

나. 일부 집행시장에서 접속매매가 불가능한 시간대에 최선집행의무를 수행할 시장의 선택은 회사의 운영방침을 따릅니다.

## 3. 회사의 최선집행기준

### 1) 최선집행기준의 세부 고려사항

- 가. 상품의 가격
- 나. 투자자가 매매체결 관련 부담하는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 다. 매매체결 가능성

### 2) 최선집행기준 [정규시장(KRX)/ 메인마켓(NXT)]

가. 기존 물량 체결 주문(Taker Order)

- 양 거래소별 즉시 체결 가능한 수량의 **총비용(총대가)**를 비교하여 **체결 단가가 작은값(매수) 또는 큰값(매도)**의 거래소로 주문수량 전량을 집행합니다.

단, 양 거래소 모두 체결단가가 '0원'인 경우는 우선지정거래소\*로 집행합니다.

\* 우선지정거래소 : SOR판단이 불가한 경우(양 거래소의 조건이 동일한 상황 등) 실시간 주문의 안정성을 위해 회사가 정한 거래소(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KRX로 지정)

나. 신규 물량 조성 주문(Maker Order)

- **상대 호가의 거래량 대비 잔량 비율**이 큰 거래소로 주문수량 전량을 집행합니다.
- 단, 잔량비율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우선지정거래소로 집행합니다.

다. 주문 유형 중 IOC/FOK조건이 부여된 주문의 경우, **총비용(매수) 또는 총대가(매도)를 기준으로 최선가격을 고려한 즉시 체결 가능한 수량 비율**에 따라 **양 거래소에 주문 수량을 배분 및 집행**합니다.

라. 회사의 최선집행기준에 의해 SOR주문 정정은 **전체 미체결 잔량 취소 후 신규 SOR주문으로 집행**합니다. 이때 신규주문에 대한 거부 사유 발생시 해당 SOR원주문은 취소되므로 투자자는 주문 후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SOR주문 정정 불가 사유

- ① 미체결 잔량의 일부수량 정정 불가
- ② 집행된 거래소간 정정(변경) 불가 (KRX→ NXT 또는 NXT→ KRX)

### 3) 시간대별 최선집행기준

시장구분	매매거래 시간	KRX 매매체결 방식	NXT 매매체결 방식	최선집행기준에 의한 집행시장 선택
프리마켓	08:00 ~ 08:30	-	접속 매매	NXT
	08:30 ~ 08:50	단일가 매매	접속 매매	NXT
	08:50 ~ 09:00 (08:50 ~ 09:00:30 NXT)	단일가 매매	휴장	KRX
메인마켓	09:00 ~ 15:20 (09:00:30 ~ 15:20 NXT)	접속 매매	접속 매매	SOR 주문에 따라 판단된 시장 (분할/비분할)
	15:20 ~ 15:30	단일가 매매	휴장	KRX
애프터마켓	15:30 ~ 15:40	-	단일가 매매	NXT
	15:40 ~ 20:00	-	접속 매매	NXT

※ 회사는 최선집행의무에 따라 투자자가 요청한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는 절차를 충분히 이행할 것이며, 주문의 결과는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II. 최선집행기준 적용 예외

#### 1. 최선집행기준 적용 일반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선집행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경우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로부터 집행 방법에 관한 별도 지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가.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집행에 관한 투자자의 별도지시가 있는 경우(Opt-Out)에는 투자자의 지시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주문을 처리·집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나. 투자자는 주문화면에서 거래소(KRX, NXT) 선택을 통한 별도지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별도지시에 따를 경우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으며 회사의 최선집행기준에 따른 결과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투자일임계약 등이 근거한 집행

- 투자일임 계약의 경우, 당해 계약 등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회사가 선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최선집행기준보다 우선됩니다.

##### 3) 거래 약관 또는 계약 등에 있어서 집행 방법을 특정하는 거래 : 당해 집행 방법

##### 4) 기타 최선집행기준 적용 예외사항: [별첨1], [별첨2] 참고

#### 2. 최선집행기준 적용 특별 예외

- 집행 시장 및 회사 시스템 장애, 집행 시장 판단 불가, 시장조치 등 부득이한 경우 SOR주문은 상대적인 거래량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KRX로 집행합니다.

### 3. 결과 책임 미귀속

- 회사의 최선집행의무는 투자자가 요청한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는 절차상의 책임입니다. 회사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주문시점에 회사가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였다면, 그 주문 결과의 책임은 회사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 IV. 그 외 최선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 1. 최선집행기준 점검 및 공표 의무 (영 §66의2③, ⑤)

- 1) 회사는 3개월마다 II.3.2) 최선집행기준 [정규시장(KRX)/ 메인마켓(NXT)]을 점검하고, 이 기준의 내용이 투자자 주문을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을 변경하고 그 변경 사실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 2) 회사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공표하거나 또는 1)에 따라 그 변경 사실(변경 이유를 포함한다)을 공표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모두 활용합니다.
  - 가. 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는 방법
  - 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2. 설명서 교부 의무 (법 §68④, 영 §66의2⑥)

- 1)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주문 또는 청약은 받는 경우 미리 문서, 전자문서(전자우편, 알림톡(SMS), 매체 팝업 등), 팩스의 방법으로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2) 다만, 이미 해당 설명서(IV.1.1)에 따라 기준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내용이 기재된 설명서를 말함)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또한, II.3.2) 최선집행기준 [정규시장(KRX)/ 메인마켓(NXT)] 이외의 부분이 변경된 경우는 IV.1.2)의 방법으로 공표합니다.
- 3) 본 설명서가 미교부된 고객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 68 조 제 4 항의 준수를 위한 조치로서 **주문 (청약) 접수가 불가하므로 거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증빙 제공 의무 (영 §66의2④, 금투협규정 §4-17①)

- 1) 회사는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투자자의 주문을 집행한 후 해당 투자자가 그 주문이 그 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공합니다.
  - 가. 서면, 전화, 알림톡(SMS), 전자우편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이하 “서면등”이라 한다)으로 제공합니다.
  - 나. 서면등에는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 ① 상품의 종목, 수량 및 매도·매수의 구분 등 투자자의 매매주문내역
    - ② 매매주문이 체결된 시간, 장소, 그 밖에 체결내용 및 방법
    - ③ 매매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이유
  - 다. 투자자가 요구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나.의 내용을 포함하여 가.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 4. 기록·유지 의무 (영 §66 의 2⑦, 금투협규정 §4-17②)

- 회사는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10 년이상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 [별첨 1]

- **예약주문** : 예약주문은 사전에 한국거래소 장개시전 시간외종가 또는 장개시전 동시호가에 주문을 예약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체거래소 도입후에는 KRX/ NXT시장의 운영시간 차이로 인한 주문착오 방지를 위해 신청 시 **거래소(KRX / NXT)를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단, 시행일 이전 신청된 예약주문 건은 고객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KRX시장으로 집행합니다.
- **정기투자 주문** : 예약주문 형태의 서비스로, 금액주문시에 소수점주문이 포함되어 있어 **모든 정기투자 주문은 KRX시장으로 집행**합니다.

##### [별첨 2]

- 하단에 기재된 채널 별 주문화면의 경우, 특수주문 형태이거나 제휴채널 등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시행일에는 KRX 거래소로 주문 집행됩니다. 추후 시스템이 안정화되었을 때, 고객수요를 반영하여 빠른 시일내에 SOR 주문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채널	NXT 거래소 적용 예외(SOR 미적용) 화면
MTS (주문)	자동감시주문, 제휴대출주문, 스탱자동주문, 호가주문
HTS (주문)	스피드주문, 스피드자동주문, 스탱자동주문, 국내주식 정기투자 내역조회 국내주식 소수점 주문, 매입인도(Buy-In) 주문, 지정일 자동매매(주문/변경), 동시주문(매도매수), 동시주문(매수매도), 분할매수 전략, 매수포착 자동주문, 매수포착 자동주문종합, 매수포착 자동주문 주문내역, 바이앤셀 주문, 셀앤바이 주문, 바이앤셀 셀앤바이 주문내역, 주식분할 자동주문, 주식분할 자동주문 주문내역, 잔고모니터링 주문, 매수시세감시, 매도시세감시, 매매시세감시 주문내역, 정적 VI 모니터링 자동주문, 정적 VI 모니터링 자동주문 주문내역, 주식종합(설정수수료), 주식종합 6, 미니주문 3, 바로주문, 펼친주문, 주문가능수량(상세), 전략주식매도, 전략주식매수, 기타 전용 주문화면
기타	신한아이 모바일, 증권 플러스, ODS 플랫폼(SMEET), 슈퍼 SOL 플랫폼, ARS 주문, 차익거래시스템, HETS 시스템 등

\* 단, 대주주문(HTS) 및 대주차입주문(MTS)은 NXT 거래소 주문은 가능하나 SOR 미적용  
[TOPS 시스템, DMA(미니원장)시스템 포함]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